

무선호출사업자 식별번호 회수 공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 - 118호

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무선호출 서비스용으로 부여한 식별번호 회수를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2. 10. 11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대상 사업자

사업자 명	허가 번호	대표자명	소재지
리얼텔레콤 주식회사	30	백 광 조	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5-68 녹십자생명빌딩 14층

2. 법적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

3. 번호 회수의 원인 사유 : 해당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(2011.6.30) 및 사업자 등록 폐지(2011.3.2)로,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호출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하지 못함

4. 회수 번호 : 무선호출서비스(전국)를 위한 식별번호(012)

5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6. 의견제출 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

7. 의견제출 안내 및 주의 사항

-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정보통신망(전자우편, 팩스 등)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제공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의견 제출 시에는 사전에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제출 후에는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 제출 처: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
 - 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
 - 전자메일 : kimhh@kcc.go.kr , FAX : 02-750-2569
 - 문의 전화 : 02-750-2578 ~ 9